

의안번호	제 326 호
의 결 연 월 일	2012년 5월 일 (제 310 회)

충청북도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안

발 의 자	유완백 의원외 6명
발의연월일	2012년 5월 1일

충청북도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안

(유완백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326
----------	-----

발의연월일 : 2012년 5월 1일

발 의 자 : 유완백, 최병윤, 김영주
김양희, 박종성, 정지숙
이광진

1. 제정이유

장애인의 체력을 증진하고 건전한 정신을 함양하여 장애인 삶의 질 제고에 기여하고,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장애인체육 진흥사업 추진 등을 위한 장애인 체육진흥 및 활성화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정의 (안 제1조, 제2조)

- 장애인의 체력을 증진하고 건전한 정신을 함양하여 장애인 삶의 질 제고에 기여
-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정한 도내 거주 장애인을 말함

나. 장애인체육 진흥 계획의 수립 (안 제3조)

- 도지사는 장애인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다. 충청북도 장애인체육회에 대한 지원 (안 제4조)

- 도지사는 충청북도 장애인체육회의 운영과 사업에 대한 경비를 지원함

라. 장애인체육 편의 제공 (안 제5조)

- 도지사는 장애인의 체육활동에 필요한 시설 설치 및 인력배치를 하여야 함

마. 장애인체육 동호회 지원 (안 제6조)

- 도지사는 장애인의 생활체육 활동을 보호·육성하고 장애인체육 동호회를 지원할 수 있음

바. 장애인 운동경기부 설치 (안 제7조)

- 도지사는 장애인 선수를 발굴·육성하기 위하여 장애인 운동경기부를 둘 수 있음

사. 운영의 위탁 (안 제8조)

- 도지사는 제5조 내지 제7조에서 정한 사항을 충청북도 장애인체육회에 위탁할 수 있음

아. 포상 (안 제9조)

- 도지사는 충청북도 장애인체육 발전에 기여한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음

자. 보고·검사 (안 제10조)

- 도지사는 충청북도 장애인체육회 또는 장애인체육 동호회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명하거나 업무관련 장부·서류·물건을 검사할 수 있음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국민체육진흥법

나. 관련부서 협의 : 행정국 체육진흥과와 협의함.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다. 기 타

(1) 입법예고 : 해당사항 없음.

(2) 규제심사 결과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충청북도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 장애인체육의 권장·보호 및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체력을 증진하고 건전한 정신을 함양하여 장애인 삶의 질 제고에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충청북도에 거주하는 장애인을 말한다.
2. “장애인체육”이란 장애인들이 운동경기·야외 운동 등 신체 활동을 통하여 건전한 신체와 정신을 기르고 여가를 선용하는 것을 말한다.
3. “장애인 생활체육”이란 장애인이 건강과 체력증진을 위하여 행하는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체육 활동을 말한다.
4. “장애인 전문체육”이란 장애인선수들이 행하는 운동경기 활동을 말한다.
5. “장애인선수”란 대한장애인체육회 가맹경기단체에 선수로 등록된 자를 말한다.
6. “장애인체육 동호회”란 장애인 5명 이상으로 구성된 비영리 민간조직으로서 대한장애인체육회에 동호회로 등록한 모임을 말한다.
7. “장애인 운동경기부”란 장애인선수로 구성된 학교나 직장 등의 운동경기부를 말한다.

제3조(장애인체육 진흥 계획의 수립) ①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장애인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장애인체육 진흥 계획에는 장애인이 건강과 체력증진을 위하여 건전한 체육 활동을 생활화할 수 있도록 장애인체육시설 개선과 확충, 장애인선수 육성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4조(충청북도 장애인체육회에 대한 지원) 도지사는 「국민체육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제2항에 따라 충청북도 장애인체육회 운영과 사업에 대한 경비를 지원하여야 한다.

제5조(장애인체육 편의 제공) 도지사는 장애인이 체육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장애인의 체육 활동에 필요한 시설 설치
2. 장애인이 참여할 수 있는 체육 활동 프로그램 운영
3. 장애인체육 지도자 및 체육 활동 보조 인력의 배치
4. 그 밖에 장애인을 위한 체육 활동 관련 정보 및 의료서비스 제공

제6조(장애인체육 동호회 지원) 도지사는 장애인의 일상적인 생활체육 활동을 권장하고 보호·육성하여야 하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장애인체육 동호회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장애인 운동경기부 설치) 도지사는 법 제10조에 따라 장애인 전문체육 활동의 저변을 확대하고 도정 홍보와 장애인 선수를 발굴·육성하기 위하여 장애인 운동경기부(이하“운동경기부”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8조(운영의 위탁) ① 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5조부터 제7조까지 정한 사업의 추진을 충청북도 장애인체육회에 위탁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운동경기부의 위탁관리에 있어 수탁자는 경기부의 조직, 인사, 복무, 보수, 회계, 물품, 합숙소 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규정을 제정하여 사전에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위탁관리에 있어 수탁자의 의무, 지도·감독, 위탁의 취소 등에 관한 사항은 「충청북도 사무의 위탁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제9조(포상) 도지사는 충청북도 장애인체육 발전에 기여한 공이 현저한 개인이나 단체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10조(보고·검사) 도지사는 보조금 지원을 받은 충청북도 장애인체육회나 장애인체육 동호회에 대하여 그 업무에 대한 보고를 명하거나 관련 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부·서류 및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준용) 보조금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충청북도 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법규 발췌

□ 장애인복지법

제2조(장애인의 정의 등) ① "장애인"이란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를 말한다.

② 이 법을 적용받는 장애인은 제1항에 따른 장애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가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신체적 장애"란 주요 외부 신체 기능의 장애, 내부기관의 장애 등을 말한다.
2. "정신적 장애"란 발달장애 또는 정신 질환으로 발생하는 장애를 말한다.

제32조(장애인 등록) ① 장애인, 그 법정대리인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호자는 장애 상태와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등록을 신청한 장애인이 제2조에 따른 기준에 맞으면 장애인등록증(이하 "등록증"이라 한다)을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0.5.27>

② 제1항에 따라 등록증을 받은 자와 그 법정대리인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호자는 해당 장애인이 제2조에 따른 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되거나 사망하면 그 등록증을 반환하여야 한다.

③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장애 상태의 변화에 따른 장애 등급 조정을 위하여 장애 진단을 받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장애 진단 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거부하거나 제2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등록증을 반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5.27>

- ④ 장애인의 장애 인정과 등급 사정(査定)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장애판정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 ⑤ 등록증은 양도하거나 대여하지 못하며, 등록증과 비슷한 명칭이나 표시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⑥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장애인 등록 및 제3항에 따른 장애 상태의 변화에 따른 장애 등급을 조정함에 있어 장애인의 장애 인정과 장애 등급 사정이 적정한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민연금법」 제24조에 따른 국민연금공단에 장애 정도에 관한 정밀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신설 2010.5.27>
-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장애인의 등록, 등록증의 교부와 반환, 장애 진단 및 장애 정도에 관한 정밀심사, 장애판정위원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국민체육진흥법

- 제10조(직장 체육의 진흥)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직장 체육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② 직장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육동호인조직과 체육진흥관리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직장인의 체력 증진과 체육 활동 육성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 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장에는 직장인의 체력 증진과 체육 활동 지도·육성을 위하여 생활체육지도자를 두어야 한다.
 - ④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장에는 한 종목 이상의 운동경기부를 설치·운영하고 경기 지도자

를 두어야 한다. <개정 2009.3.18>

-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직장 체육에 관한 업무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이 지도·감독한다.[시행일 : 2012.8.18] 제10조제3항, 제10조제4항

제18조(지방자치단체와 학교 등에 대한 보조) ① 국가는 회계연도마다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와 학교 등에 대하여 체육 진흥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한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한국도핑방지위원회, 서울 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그 밖의 체육단체와 체육 과학 연구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나 연구비의 일부를 보조한다.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체육활동의 차별금지) ① 체육활동을 주최·주관하는 기관이나 단체, 체육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체육시설의 소유·관리자는 체육활동의 참여를 원하는 장애인을 장애를 이유로 제한·배제·분리·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신이 운영 또는 지원하는 체육프로그램이 장애인의 성별,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을 고려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장애인의 참여를 위하여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체육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